

2002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발음 : 평창군수

2002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사기간 : 2003년 05월 15일 ~ 06월 03일(20일간)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영 해(총괄)
- 검 사 위 원 : 김 진 석(세입분야, 공유재산, 기금, 금고)
- 검 사 위 원 : 정 장 용(일반회계세출)
- 검 사 위 원 : 강 동 석(특별회계세입세출, 채권, 채무, 물품)

평창군결산검사위원

2002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평 창 군 수 귀 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 5월 15일부터 2003년 6월 0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40조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2. 검사기간 : 2003. 05. 15 - 06. 03(20일간)

3. 위원별 검사분야

- 대표위원 김 영 해 : 결산총괄
- 위 원 김 진 석 : 일반회계세입, 재산 및 기금의결산, 금고결산
- 위 원 강 동 석 :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 물품의 결산
- 위 원 정 장 용 : 일반회계세출, 계속비, 이월비

4. 검사방법

-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 등에 주안 검사 실시
- 계수의 과오 여부를 증빙서류와 상호 대조검사

5.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1) 세입분야

- 결산서와 징수부 대사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
- 체납액 정리 및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 결손처분의 적정성
- 여유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노력

2) 세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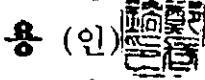

- 결산서와 지출장부의 대사
- 법제, 원칙등에 입각한 적정한 지출여부
-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 여부
- 예산전용 및 불용처리의 타당성
- 예비비 운영의 적정성
-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3)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 결산서와 세입징수부, 지출장부 대사
- 주택용자금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재산등 재산의 성실한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상태

6. 검사결과 및 의견서 : “별첨”과 같음.

2003년 6월 03일

대표검사위원	김 영	해	
검사위원	김 진 석	석	
검사위원	정 장 용 (인)	용	
검사위원	강 동 석	석	

**2002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2002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 목 차 〉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7
2) 세출-----	8
2. 일반회계	
1) 세입-----	9
2) 세출-----	10
3. 특별회계	
1) 세입-----	11
2) 세출-----	12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13
2) 채권-----	13
3) 채무-----	14
4) 공유재산-----	14
5) 물품-----	15
5. 세입세출외현금-----	15
6. 검사결과(총평)-----	16
7.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18

2002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2002년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2001)	161,858,707,000	191,761,330,062	188,092,598,080	352,781,210	3,668,731,982
당해년도 (2002)	220,390,128,000	246,722,287,841	242,350,075,314	259,248,350	4,112,964,177

가. 세입결산 개요

- 2002년도 수납액 242,350,075,314원은 예산액의 109.96%로서 21,959,947,314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23%로 나타남.

※ 2001년도

- 수 납 액 : 188,092,598,080원 (예산액의 116.21%)
- 정수결정액 : 191,761,330,062원 (예산액의 118.47%)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01)	161,858,707,000	26,131,635,060	187,990,342,060	141,181,537,166
당해년도(2002)	220,390,128,000	40,210,621,300	260,600,749,300	155,667,218,913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40,210,621,300 (2,250,593,000)	6,598,183,594	49,911,060,914	360,284,747	8,590,747,817
95,609,602,490 (13,780,551,200)	9,323,927,897	86,682,856,401	538,794,815	4,315,010,296

※ ()안은 전체 이월금 중 자금없는 이월금액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한 220,390,128,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0,210,621,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0,600,749,300원임.
- 지출액은 155,667,218,913원으로 예산현액의 59.73%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업비 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에 14.41%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㉑)	이월사업비				현액대 비율
		계(㉒)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2001)	187,990,342,060	171건 40,210,621,300	86건 22,814,299,330	68건 5,161,694,280	17건 12,234,627,690	21%
당해년도 (2002)	260,600,749,300	162건 95,609,602,490	95건 66,737,045,010	53건 6,141,792,000	14건 22,730,765,480	37%

- 3)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9,323,927,89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15,010,296원으로 예산현액의 1.6%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2001)	146,112,744,000	173,830,932,499	170,392,633,658	352,271,210	3,438,298,841
당해연도 (2002)	194,829,490,000	219,372,678,866	215,927,842,846	259,248,350	3,185,587,670

가. 세입결산 개요

- (1) 수납액은 215,927,842,846원으로 예산액의 110%이며, 징수결정액은 219,372,678,866원으로 예산액의 112%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2001년도

- 수 납 액 : 170,392,633,658원 (예산액의 117%)
- 징수결정액 : 173,830,932,499원 (예산액의 119%)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1)	146,112,744,000	22,254,064,330	168,366,808,330	129,191,493,916
당해년도(2002)	194,829,490,000	33,674,164,350	228,503,654,350	146,810,213,701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3,674,164,350 (648,622,000)	5,501,150,064	41,201,139,742	310,389,187	7,865,208,205
76,195,276,020 (10,910,918,200)	5,498,164,629	69,117,629,145	519,826,255	3,313,445,070

※()안은 전체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194,829,490,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374,164,35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8,503,654,35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149건에 76,195,276,020원으로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1)	168,366,808,330	157건 33,674,164,350	83건 22,570,910,120	62건 4,630,387,620	12건 6,472,866,610	20%
당해연도 (2002)	228,503,654,350	149건 76,195,276,020	90건 63,207,656,790	51건 6,052,072,000	8건 6,935,547,230	33%

3. 특별회계(공기업 및 기타)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2001)	15,745,963,000	17,930,397,563	17,699,964,422	0	230,433,141
당해연도 (2002)	25,560,638,000	27,349,608,975	26,422,232,468	0	927,376,507

가.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26,422,232,468원으로 예산액의 103%이며, 징수결정액은 27,349,608,975원으로 예산액의 107%이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6%임.

-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공기업	6,312,628,000	7,310,485,706	6,585,892,486	0	724,593,220
기 타	19,248,010,000	20,039,123,269	19,836,339,982	0	202,783,287

※ 2001년도

- 수 납 액 : 17,699,964,422원 (예산액의 112%)
- 징수결정액 : 17,930,397,563원 (예산액의 114%)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01)	15,745,963,000	3,877,570,730	19,623,533,730	11,990,043,250
당해년도(2002)	25,560,638,000	6,536,456,950	32,097,094,950	8,857,005,212
공 기 업	6,312,628,000	664,302,860	6,976,930,860	5,577,829,440
기 타	19,248,010,000	5,872,154,090	25,120,164,090	3,279,175,772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536,456,950 (1,601,971,000)	1,097,033,530	5,709,921,172	49,895,560	725,539,662
19,414,326,470 (2,869,633,000)	3,825,763,268	17,565,227,256	18,968,560	1,001,565,226
1,068,820,000 (570,483,000)	330,281,420	1,008,063,046	0	509,726,046
18,345,506,470 (2,299,150,000)	3,495,481,848	16,557,164,210	18,968,560	491,839,180

※()안은 전체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25,560,63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536,456,95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097,094,95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13건에 19,414,326,470원(전체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 15%)으로 예산현액의 60%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2001)	19,623,533,730	12건 6,536,456,950	3건 243,389,210	4건 531,306,660	5건 5,761,761,080	33%
당해년도 (2002)	32,097,094,950	13건 19,414,326,470	5건 3,529,388,220	2건 89,720,000	6건 15,795,218,250	60%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 (2001)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2)
			계	수납액	지출액	
총	계	1,666,159,741	464,203,349	552,325,859	88,122,510	2,130,363,090
재해대책기금		340,322,920	75,163,540	103,461,250	28,297,710	415,486,460
재난관리기금		80,018,600	25,721,380	25,721,380	0	105,739,98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5,134,770	△1,907,330	4,492,670	6,400,000	103,227,440
노인복지기금		655,621,341	90,597,549	131,597,549	41,000,000	746,218,890
장애인복지기금		327,032,100	123,860,740	123,860,740	0	450,892,840
평창군장학기금		158,030,010	47,667,470	60,092,270	12,424,800	205,697,480
여성발전기금		0	103,100,000	103,100,000	0	103,000,000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서 기금현재액은 2001년 도 1,666,159,741원 보다 464,203,349원이 증가된 2,130,363,090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회계별	계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기간도래원금	미도래 원금	기간도래원금	미도래 원금	
합	계	2,634,347,634	216,986,200	170,000,000	260,682,546	440,029,549
특별회계	주택사업	1,533,592,344	216,986,200	0	198,590,460	0
	주민소득지원	1,100,755,290	0	170,000,000	62,092,086	440,029,549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1년말 현재액 2,948,073,529원에서
- 2002년도에 386,986,200원이 발생, 700,712,095원이 소멸되어
- 2002년도말 현재액은 2,634,347,634원임.

3) 채 무

○ 2002년도말 현재(원금 기준)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상환소멸액		기일도래미지급액	
		원금	이자		
합	계	15,291,912	1,543,592	787,402	0
일 반 회 계	계	2,835,032	473,410	100,463	0
특별회계	소 계	12,456,880	1,070,182	686,939	0
	상수도공기업	11,446,200	761,600	583,776	0
	주 택 사 업	1,010,680	308,582	103,163	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1년도말 현재액 16,835,504천원에서
- 2002년도말 현재액은 15,291,912천원을 상환하여
- 2002년도말에는 2,330,994천원 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천원)

용도별	구 분	2001년말 현재액	2002년말 현재액	증감(△)
합	계	71,471,588	76,054,120	4,582,532
행정 재산	계	37,237,693	41,746,034	4,508,341
	공공용재산	23,241,248	27,226,973	3,985,725
	공용 재산	13,827,692	14,350,308	522,616
	기업용재산	168,753	168,753	0
보 존 재 산		0	0	0
잡 증 재 산		34,233,895	34,308,086	△74,191

가.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2001년말 현재액 71,471,588천원에서 4,582,532천원이 증가한 76,054,120천원으로

- 토지 124,314,000㎡ 64,399,613천원
- 건물 45,800㎡ 11,645,107천원
- 기타 (기계,기구) 24건에 9,400천원임.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1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960	수량	787	53	4	57	15	21	36	808
	금액	2,571,148	448,351	51,503	499,854	84,275	42,014	126,289	2,944,713

가. 200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1년말 현재액 2,571,148천원보다 373,565천원이 증가한 2,944,713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99,854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 상각 등으로 126,289천원이 감소함.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2년 증감내역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평창군	800,892,752	442,764,926	3,643,436,904	3,200,671,978	1,243,657,678

가. 2002년도말 현재액은 1,243,657,678원으로 2001년도말 800,892,752원보다 442,764,926원이 증가함.

6. 검사결과

〈총 평〉

2002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 연찬과 정확한 결산의 의지 및 노력으로 계수과오는 1건도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세입분야

- 평창군의 총 세입은 전년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6.7%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대비 0.4%, 지방양여금은 24.8%, 조정교부금은 23.8%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 지방교부세 4.2%, 국도비 보조금은 94% 증가되어 의존 재원에 의한 세입 증대를 확인할 수 있었음.

특별회계 또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대비 8.4% 감소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그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국고) 등 의존 재원 증가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세 등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부단한 업무연찬과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전년대비 체납액 24% 증가)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분야

-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하면서 생활환경의 향상, 문화생활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과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행정추진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됨.
-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

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지역이기주의로 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계획변경이 잦아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읍면 결산을 수행한 결과 평창읍,미탄면, 방림면을 제외한 5개면은 지급내역부마감이 정리되지 않는 등 장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터의 2002회계년도 보조사업은 총531건 9,487,637천원으로 지역안배, 적법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집행 운영되어야 할 것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를 참고 바람.

○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분야

○ 기금에 대한 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기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부 기금은 기금관련법 해석 착오로 해당 기금운용관이 책임 관리하여야 함에도 평창군세입세출외현금에 지출금을 일시 보관한 뒤 집행한 사실이 있었음.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자체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검사 결과,

국민주택융자금(채권)은 국민은행으로부터 평창군이 상환해야 할 자금이므로 연체로 인한 군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군비로 선 집행한 뒤 일반주민으로부터 상환 받는 등의 연체 해소를 위한 노력이 가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창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가 타시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바, 더 이상의 채무행위 자제가 필요하며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세수 증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에 대한 검사 결과,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전산관리에 의한 누락 등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조확인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사항

○ 대화면사무소 상수도업무담당자에 대한 표창 상신

대화면사무소 상수도업무담당자 박원근은 면내 상수도 수용가 966세대의 상수도사용료가 월평균 1,1200만원이 부과되며, 과년도 체납액이 46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공가 및 상수도수용가를 일일 야간에 방문하여 정수 독려하여 2003년 5월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1건의 체납도 없이 징수하였으며, 수용가의 상수도사용에 대한 불편함 등을 철저히 파악·해소함으로써 대민 봉사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타직원에게 모범이 되므로 직무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하여 “군수”표창에 상신함.

□ 기타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은 다음의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를 참고바람.

<붙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

지 적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1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징수 철저
2	군금고 검사 결과
3	세외수입(폐기물반입수수료)체납액 징수 철저
4	물품관리 철저
5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관리 철저
6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해소 방안 강구
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점 제시
8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사고이월 부적정
9	2002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고이월 부적정
10	고령지수출농산물생산지원 추진 미흡
11	저온 유통기반확충사업 추진 미흡
12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 미흡
13	군립대화도서관 신축공사 추진 미흡
14	미탄면 창3리 마을회관신축공사 추진 미흡
15	보조사업 주택공사 추진 미흡
16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사업 추진 미흡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
- 제 목 :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징수 철저
- 현 황 : 별첨

- 문제점
 - ▶ 고질 체납자 자진납부 감소 및 증가 추세
 - ▶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전산입력과 대장관리 병행)

□ 감사자 의견

- 지방세 등 세원발굴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이 요구되며,
- 전산(입력)을 통한 체납자 관리와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대장을 작성,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됨.(전산과 수작업 병행 요망)
- 징수 불가능분은 관계법에 의거 결손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01 및 '02회계연도 군세 과징사항

(단위:천원 %)

세 목	2001년 회계연도(A)					2002년 회계연도(B)					이월 대 (B/-)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계	13,863,404	11,812,930	2,050,474	352,757	1,697,717	13,663,374	11,761,403	1,901,971	259,248	1,642,723	97.5
주민세	1,278,456	1,228,951	49,505		49,505	1,579,029	1,473,085	105,944	28,192	77,752	100.0
재산세	851,348	790,250	61,098		61,098	940,855	881,713	59,142	25	59,117	96.5
자동차세	1,839,373	1,616,657	222,716		222,716	1,632,471	1,408,945	223,526	101	223,425	100.0
주행세	424,520	424,520	-		-	773,371	773,371	-		-	0.0
농지세	3,693	2,794	899		899	10,662	10,662	-		-	0.0
도축세	44,752	44,752	-		-	47,415	47,415	-		-	0.0
담배소비세	3,524,713	3,524,713	-		-	2,892,214	2,892,214	-		-	0.0
종합토지세	3,245,728	3,193,955	51,773	42	51,731	3,395,590	3,341,095	54,495		54,495	105.0
도시계획세	272,098	247,974	24,124		24,124	271,023	243,242	27,781	12	27,769	115.0
사업소세	281,087	278,450	2,637		2,637	271,182	270,723	459		459	17.0
과년도수입	2,097,636	459,914	1,637,722	352,715	1,285,007	1,849,562	418,938	1,430,624	230,918	1,199,706	93.0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2

○ 제 목 : 군 금고 검사 결과

○ 현 황 : 군 금고(농협군지부군청출장소)1개소
수납대행점 27개소

○ 문제점

- 일부 대행점의 경우

▶ 업무미숙과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수납금 지연이체

▶ 영수필통지서 송부 지연으로 민원분쟁 야기

▶ 일계표 미작성 및 관리소홀

▶ 공금이자 미계산 및 미불입

▶ 도세·군세 및 특별회계 미분류 및 통합송금 등 업무처리 지연

□ 검사자 의견

○ 수납대행점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강화

○ 담당자 인사이동시 철저한 교육실시 요망

□ 자금이체 지연 및 변상금 부과내역

금고(수납대행점)	이체금액	지연일수	변 상 금	비 고
계	96,526,237	16	57,310	
평창군금고	47,735,408	1	24,840	
평창축산업협동조합	4,600,214	4	4,480	
평창농협방림지소	8,552,118	3	6,240	
평창축협대화지소	1,511,680	1	780	
봉평농협장평지소	3,765,680	2	3,500	
평창축협봉평지소	706,650	1	360	
봉평농업협동조합	5,625,220	1	2,920	
평창축농협진부지소	16,970,930	1	10,520	
진부농업협동조합	6,723,995	1	3,500	
도암농협유천지소	333,840	1	170	
대관령신용협동조합			1,090	상.하반기 이자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3
- 제목 : 세외수입(폐기물반입수수료) 체납액 징수 철저
- 현황 : 별첨
- 문제점
 - ▶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반입시 수수료를 징수한 후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함에도 반입자가 현금이 없어 추후 납입하기로 한 후 이행하지 않아 체납 발생

□ 감사자 의견

- 폐기물 반입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후 관리 철저

범위 : 2130301-471-200201-1-00000
 ~ 2130402-471-200212-2-99999

제남내역서 (실과소수)

출력일 : 2003.05.10
 보고서 : SEIP320
 페이지 : 1

108

실과소 고지번호 계정코드내역	성명 등록번호 주소	과세물건 적요	과세표준액 세액	군세 도세 국세	납기일자 압류일자 외종이지일자
471 환경복지(환경) 2130402-471-200204-2-00064 폐기물반입-매입	최봉수(3675) 평창군 평창읍	폐기물반입수수료(23800/본) 하리	0 0.00 8,330	8,330 0 0	2002/05/04 2002/05/31
471 환경복지(환경) 2130402-471-200205-2-00053 폐기물반입-매입	전양건설(4700) 평창군 대화면	폐기물반입수수료(23800/본) 대화리	0 0.00 71,400	71,400 0 0	2002/05/28 2002/05/31
471 환경복지(환경) 2130402-471-200207-2-00013 폐기물반입-매입	이호석(5159) 평창군 평창읍	폐기물반입수수료(23800/본) 중부리	0 0.00 34,850	34,850 0 0	2002/07/19 2002/07/23
471 환경복지(환경) 2130402-471-200208-2-00033 폐기물반입-매입	손한규(1913) 평창군 대화면	폐기물반입수수료(23,800원/본) 대화7리	0 0.00 14,000	14,000 0 0	2002/08/24 2002/09/30
471 환경복지(환경) 2130402-471-200211-2-00062 폐기물반입-매입	차순기 평창군 용평면	폐기물반입수수료(본당23800) 계산리	0 0.00 5,000	5,000 0 0	2002/12/11 2003/01/02
소 계		총 건 수 : 5		133,580 0 0	
환경복지			133,580	0 0	
총 계		총 건 수 : 5	0 133,580	133,580 0 0	

평창군청 박규석

27. 2003. 5. 10
 39H

함.

※ 200^지년도 세외수입 체납내역

1. 체납내역

성명	금액	납기	과세번호	비고
최광수	8,330원	2002.04.19 - 05.04	00064	
진양건설	71,400원	2002.05.14 - 05.28	00053	
이호석	34,850원	2002.07.05 - 07.19	00073	
손한규	14,000원	2002.08.09 - 08.24	00033	
차순기	5,000원	2002.11.27 - 12.11	00062	

133,580 (112.5%)

2. 체납사유

- 진양건설(00053) : 29.100
00053번은 과세내역 기재착오로 삭제후 다시 00053번으로 재입력하여야 하나 00053번으로 이중입력.
- 최광수 외 3건 :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현장납부하여야 하나 반입자가 현금 없이 추후 납입하기로 한것이나 미납한것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4

○ 제 목 : 물품관리 철저

○ 현 황

-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장부를 비치·관리하거나 전산입력처리시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 ▶ 행정자치부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관리하고 있어, 보다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제점

- ▶ 재물 조사 및 수시 정수 현황 파악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임물품출납원의 특별한 교육 필요
- ▶ 정수, 변수의 상황을 수시 입력하여 대조하지 못할 경우 물품관리의 혼란 등의 문제발생 요인 제공

□ 검사자 의견

- 분기 또는 정기적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의 교육과 점검을 통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선진 타시군 견학 및 프로그램운영 전문 강사 등의 전수 교육을 통한 전문관리직원 양성.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5

○ 제목 :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관리 철저

○ 현황

▶ 2003회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2,919,571천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금 2,520,000천원이 평창군으로 교부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불용액(예산액-집행액)으로 결산처리 됨.

○ 문제점

▶ 군비 부담액만 지출되어 실제 세입 및 세출의 결손은 없다고 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시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여 변경 내시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변경하여야 함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상 미수납에 따른 불용액을 가중시키는 등 업무담당자의 업무(예산)처리 능력이 떨어짐.

□ 감사자 의견

○ 국도비보조로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시에 자금이 착금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국도비 착금에 따른 평창군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6
- 제 목 :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해소 방안 강구
- 현 황
 - ▶ 융자 총 세대수 : 613세대
 - ▶ 융자금액(원금) : 3,221,077천원
 - ▶ 융자조건 :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 연리 9.5%
- 문제점
 - ▶ '74년부터 시행된 국민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금리가 당시 10%의 저금리로 융자되었으나, 최근 은행의 금리이하로 일반대출자금보다 고금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 ▶ 20년간의 장기 융자로 일반서민에게 대출되었으나 대출자의 부도 및 전출 등으로 장기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저당 물건의 노후 등으로 강제 경매시 대출금 및 이자의 충당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 ▶ 개인 채무과 관련한 강제 경매시 990만원의 근저당설정금액이 소요 되어 대출금액 이상 연체시 불가피하게 군비로 충당하여야 됨.

□ 검사자 의견

-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재대출된 자금은 전출 등 거소불명에 인한 원금 및 연체금 회수가 불가능할 시 군비로 충당하여야 할 대출금인 바, 현재까지 연체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군비로 재원을 우선 충당하여 연체된 융자금을 먼저 상환함이 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사료됨.
-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망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7

○ 제 목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점 제시

○ 현 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관한 규정 등에 의거 군비지원

▶ 2002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

-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 250,000천원 380,000천원
- 도암중학교 합숙소 증축지원 : 130,000천원

▶ 보조사업의 범위(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중)

①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③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④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 문제점

▶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화와 병행하여 지역교육발전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만들기에는 많은 기여가 될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 지역교육청과 관내 각급학교에서 무분별한 재정지원 요구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는 모두 충족 불가능

▶ 도 교육청의 예산확보 의지, 적극성, 타 예산확보 강구 등에 오히려 지역교육청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예산확보 체계에 문제점 있음.

□ 감사자 의견

○ 지원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을 명백히 검토한 뒤 집행

○ 보조금사업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정밀분석 후 지원

○ 기 조성된 다목적실 등은 주민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8
- 제목 :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사고이월 부적정
- 현황
 - ▶사업량 : 콘크리트포장 : B=5.0m, L=112m, A=5.60a
 - ▶사업비 : 14,770,000원
 - ▶사업비 7,634,230원 사고이월
- 문제점(개선사항)
 - ▶공사준공 잔여금은 불용액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4개 과목의 사업 집행잔액인 22,000,000원을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로 계약 후 이월 시킴으로서 미편성 예산 집행(목적외 사업 추진)
 - 계약 체결 시행문 예산과목 참조(붙임)

□ 감사자 의견

- 예산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반납조치 하여야 하고, 당초에 사업비를 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경 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지 말아야 할 것임.

진 부 면

우 230-910 / 강원 평창 진부면 하진부리 251-2 / 전화 033-330-2607 / 전승 033-330-2637
 진부면사무소 처 리 부 서 : 총무부서 총 무 담 당 : 박 용 호 담당자 정 태 일

문서번호 진부 13310-2937

시행일자 ()

(경 유)

수 신 내부결재

참 조

보존기간	5		
공개여부	공개	허해성	
기 안	정 터 일	총무담당	박 용 호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계약체결

우리면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를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시행코자 합니다.

1. 공 사 명 :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 위 치 : 진부면 장전리
3.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B=5.0m, L=112m. A=5.60a
4. 계약금액 : 일금일천사백칠십칠만원정(₩14,770,000)
5. 계 약 자 : 진부면 하진부리 75-5 (주)대산건설 고 윤 숙
6. 예산과목 :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마을안길정비, 자체사업, 401-01.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마을안길정비, 보조사업, 401-01.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소교량가설, 자체사업, 401-01.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401-01

붙임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부(별첨). 끝.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9
- 제 목 : 2002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고이월 부적정
- 현 황
 - ▶ 대 상 지 : 봉평면 무이리 태기산 산채작목반
 - ▶ 대 표 자 : 박 종 학
 - ▶ 사 업 비 : 1,147백만원(국비 400, 도비 200, 군비 200, 자부담 348)
 - ▶ 참여농가 : 118농가
 - ▶ 면 적 : 64ha
 - ▶ 당초예산에 보조금 800,000천원으로 책정되었으나 66.2%인 530,184천원을 사고이월 시킴.
- 문제점(개선사항)
 - ▶ 강원도로부터 2002. 5. 24. 사업승인 후 공사 착공 지연
 - 2002. 5. 14 강원도 사업승인
 - 2002. 7. 9 시설물건축허가
 - 2002. 8. 20 착공
 - 2002. 11. 30. 동절기 공사 중지
 - ▶ 천연자재 및 창고(50평), 공동작업장(50평)은 2002년도에 준공처리 되었어야 함.

□ 검사자 의견

- 각종 기자재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 2002년도에 납품이 완료되었어야 하며, 준공 예정일(2003. 6. 30)까지 사업 완료 조치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0
- 제 목 : 고랭지수출농산물생산지원 추진 미흡
- 현 황
 - ▶ 여름 딸기 양액재배 : 11농가 -10,000평, 6억(보조50%)
 - ▶ 고랭지 파프리카 : 8농가 - 6,000평, 2억4천만원(보조50%)
 - ▶ 2002. 7. 10. 농가 선정
 - ▶ 시설물 8개 설치 완료
- 문제점(개선사항)
 - ▶ 시설물 설치가 8. 1.~11. 30.까지 완공하여야 했으나, 기간내 완공처리 못하고 공사비 420,000,000원을 사고이월 됨.

□ 검사자 의견

- 여름 딸기 양액재배(해발 700m이상)와 고랭지 파프리카 재배(해발 500m)는 관내 8개 읍·면을 조사 후 농가를 선정해야 하나 진부, 도암 2개면만 선정 후 사업추진은 불공정함.
(고랭지 수출농산물은 평창군 북부지역(대화이북)에 편중지원되고 있어 평창군 남부지역에 위치한 농업인들에게 문제점을 대두)
- 당해연도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대체농업 육성시 고른 지역안배를 통한 지역발전 유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변 호 : 11

○ 제 목 : 저온 유통기반 확충사업 추진 미흡

○ 현 황

▶ 대 상 자

- 황계7리 영농회(대표자 박 용 석)
- 상동양채작목반(황계10리 김 형 삼)

▶ 보조사업비 50,000천원(군비지원) 전액 이월

○ 문제점(개선사항)

▶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 및 설치위치 부적정 등으로 인해 전액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시행전 실질적 영농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추진의지 및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검사자 의견

○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대상자 선정 및 위치 선정) 후 사업추진
요망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12
- 제목 :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추진 미흡
- 현황
 - ▶ 대상지 : 봉평면 무이리 산 96번지 임야 244,364㎡
 - ▶ 사업비 : 155,562천원
 - 도비 : 46,668천원
 - 군비 : 108,894천원
 - ▶ 대상자 확정 2002. 4. 20(평창축산협동조합장)
- 문제점(개선사항)
 - ▶ 대상자 확정만 하고 사업추진 부진으로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
 - ▶ 담당공무원의 사업촉구 조치등 추진의욕 결여.

□ 검사자 의견

- 대상자 선정 후 불성실 사업추진
- 연도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만하고 이전사업 추진상태는 전무한 상태로 대상자 선정 등 차질 초래.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촉구.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13

○ 제목 : 군립대화도서관 신축공사 추진 미흡

○ 현황

- ▶ 대화면 대화리 1172-1번지의 3필지 3,900㎡
- ▶ 건물 연면적 1,618㎡(지하1층 지상2층)
- ▶ 사업비 20억원
- ▶ 이월비 1,046,190,630원

○ 문제점(개선사항)

- ▶ 당초 설계용역 착수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 ▶ 터파기 ^{취급한} 이전 신축공사 지역의 정밀조사 필요(암발생)
- ▶ 담당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후임자 공사 파악 지연 등 문제발생

□ 검사자 의견

- 사업착수 전 주민설명회, 현장검증 등을 통해 발생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추진요망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연도내 사업완공 추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4
- 제 목 : 미탄면 창3리 마을회관신축공사 추진 미흡
- 현 황
 - ▶ 위 치 : 창리 276-2번지
 - ▶ 사업량 : 마을회관 1식(바닥면적 99.66㎡, 건축면적 58.68㎡:2층)
 - ▶ 사업비 : 74,056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당초 부지 선정시 주민과 토지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선정
 - ▶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명시이월 되어 2002회계년도 결산 검사 현재까지 사업 착공이 되지 않아 2003년도에도 준공 처리가 불투명함.

□ 검사자 의견

- 사업추진 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 후 사업추진 요망
- 부지 선정이 선행되는 사업은 주민과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요망
- 2003년 준공을 위해 경계측량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 착공하여 년내 완공토록 추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5

○ 제 목 : 보조사업 주택공사 추진 미흡

○ 현 황

▶ 미착수 주택 건축 : 30동

- 영월댐수몰 예정지 농촌 주택 : 22동

- 8월 집중호우 피해 주택복구 : 2동

-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 : 6동

▶ 사고이월액 393,799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영월댐수몰 예정지 농촌 주택지원 사업의 예산편성시 사업부서에 편성해야 하나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 사업부서 지역도시과로 분리 편성하여 혼선 초래

▶ 동절기 전에 응급복구 및 주택완공을 목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였어야 하나 공기부족, 주택하자 등의 이유로 공사를 지연하여 사업비 393,799천원을 이월시킴.

□ 검사자 의견

○ 예산편성시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비슷한 사업에 대해 공무원과 해당주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편성 요망.

○ 집 없이 동절기를 보내야 하는 주민들의 애로를 감안, 신속히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6

○ 제 목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사업추진 미흡

○ 현 황

-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11,700,000원 명시이월
 - 위험표지판 제작 : 20개소
 - 현수막 제작 : 40개소
 - 인명구조 도구(구명환, 로프) 구입 : 20개소

○ 문제점(개선사항)

- ▶ 1회추경에 예산확보 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안전사고요인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당해연도 예산을 이월시킴.
- ▶ 인명구조도구, 입간판 등은 제작보관한 뒤 다음연도에 사용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사료됨.

□ 검사자 의견

- 8월집중호우, 태풍 '루사' 내습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요인이 없어졌다 하여도 사고 1회추경 확정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인명구조 도구는 구입 보관한 뒤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의 이월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계획)

번호	계 목	지적사항(문제점) 및 의견	처 리 결 과 (계 획)	관련부서
1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징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질체납자 자진납부 감소 및 증가 추세 •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전산입력과 대장관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등 세원발굴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강도높은 징수활동 요구 - 전산입력을 통한 체납자 관리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대장작성 요망 - 징수 불가능분은 관계법에 의거 결손 처분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지속적인 징수반 편성·운영하여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 강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지방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 별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명 1,738백만원 • 징수 불가능한 세입분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 실시, 관계법에 의거 인중 결손 처분 실시 후 관리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임. 	재무과 (징수계)
2	군금고 검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대행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미숙과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수납금 지연이체 - 영수필통지서 송부 지연으로 민원분쟁 야기 - 일계표 미작성 및 관리소홀 - 공급이자 미계산 및 미불입 - 도세·군세 및 특별회계 미분류 및 통합송금 등 업무처리 지연 • 수납대행점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강화 • 담당자 인사이동시 철저한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금고 및 관내 수납대행점에 대한 정기적인 정기검사실시로 세입금 이체 지연 방지 및 지연이체분에 대한 철저한 변상금 부과 - 11개소 57,310원 수납완료 • 담당자 인사이동시 철저한 업무인수인계 조치 지시(공문통보) 	재무과 (징수계)

번호	제 목	지적사항(문제점) 및 의견	처 리 결 과 (계 획)	관련부서
3	세외수입(폐기물반입수수료) 체납액 징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반입수수료는 반입시 수수료를 징수한 후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하나 반입자가 현금이 없어 추후 납입하기로 한 후 이행하지 않아 체납 발생 - 폐기물 반입철자 반드시 이행 -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반입시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반입토록 업무추진 • 체납된 반입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 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예정 	환경복지과 (위생매립장)
4	물품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물조사 및 수시 정수 현황 파악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입물품출납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 필요 • 정수, 변수의 상황을 수시 입력하여 대조하지 못할 경우 물품관리의 혼란 등 문제발생 요인 제공 - 선진 시군 견학 및 프로그램운영 전문강사 등을 통한 전수교육으로 전문관리직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로 분입물품출납원에 대한 물품관리 현황 및 입력 상황 점검 • 프로그램운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체계적인 물품관리 확행 	재무과 (경리계)
5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회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중 국도비 2,520백만원이 균으로 교부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됨. - 국도비 보조로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시에 자금이 착금될 수 있도록 노력 - 국도비 착금으로 이자수입 증대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착금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환경복지과 (사회복지계)

번호	제 목	지적사항(문제점) 및 의견	치 리 결 과 (계 획)	관련부서
6	국민주택융자금 연체해소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년부터 시행된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금리가 당시 10%의 저금리로 융자 되었으나 최근 은행의 금리이하로 일반 대출자금보다 고금리로 적용 • 대출자의 부도 및 전출 등으로 장기 체납자 발생, 저당물건의 노후 등으로 강제 경매시 대출금 및 이자의 충당이 불가능한 현실 • 강제 경매시 990만원의 근저당설정금액이 소요되어 대출금액 이상 연체시 불가피하게 군비로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불가능분은 군비로 충당하여야 할 대출금인 바 연체된 대출금에 대하여 군비로 재원을 우선 충당한 후 연체된 융자금을 징수함이 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 사료됨 - 융자금 회수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가 불가능한 원금 및 연체금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체된 대출금을 먼저 국민은행에 상환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임. • 현재 건축계 직원 1명이 국민주택융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인력 배치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임. 	지역도시과 (건축계)

번호	제 목	지적사항(문제점) 및 의견	처 리 결 과(계 획)	관련부서
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여건이 충분히 많음을 감안할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 - 지역주민과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정밀 분석 후 지원 -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활용토록 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함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경비보조에 대하여는 - 우선적으로 사업비 지원에 충분한 재정력의 여건이 따르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군 교육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익 및 활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축성 있게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으며, - 또한, 각급 학교, 지역간의 형평성과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별로 지원 규모,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처리규정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갈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금처럼 추진해왔던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

번호	제 목	지적사항(문제점) 및 의견	처 리 결 과(계 획)	관련부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역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요청이 없도록 하고, - 아울러 기 조성된 다목적실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8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사고이월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반납조치하여야 하고, 당초에 사업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추경 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 4개의 예산과목의 집행 잔액인 22,000천원을 장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로 계약 후 이월시킴으로서 미편성 예산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이와 같은 회계질서문란 행위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할 것 임. - 예산 편성 후 집행 - 집행잔액 반납 철저 	진부면 (총무계)
9	2002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사고이월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로부터 2002. 5. 24 사업 승인 후 공사 착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5. 30일 사업 완료 (2003. 6. 10 준공식)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문제점) 및 의견	처 리 결 과 (계 획)	관련부서
10	고랭지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추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내 완공처리 못하고 420,000천원을 사고이월시킴. • 고랭지 수출농산물은 평창군 북부지역(대화이북)에 편중지원되고 있어 평창군 남부지역에 위치한 농업인들에게 지역안배 등의 문제점으로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평창군 남부지역에 대한 대체작물 육성 등 지역안배를 위한 지원방법 검토 • 기한내 사업을 완공토록 업무추진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11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추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지연 및 설치위치 부적정 등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전액 이월됨. - 추진의지 및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루사”에 의한 피해와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으로 2003. 6. 15 완료토록 추진 중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12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추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사업추진 부진 및 사업촉구 결여로 전액 이월된 사업으로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 및 건축 설계 후 사업추진 • 기한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와 노력 경주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과)
13	군립대화도서관신축공사 추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설계용역 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 터파기 이전 신축공사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 담당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후임자 공사 파악 지역 등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터파기 암발생 및 기타부분에 대한 1차 설계변경 완료(2003. 5. 30) • 냉방시설변경 등으로 건축마무리 공사 부족사업비 1회 추경예산 확보 •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 및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2003. 9. 30일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임. 	문화관광과 (문화담당)

번호	제 목	지적사항(문제점) 및 의견	처 리 결 과 (계 획)	관련부서
14	미탄면 창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선정이 선행되는 사업은 주민과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요망 • 년내 사업 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중에 있으며, 경계측량 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미탄면
15	보조사업 주택공사 추진 미흡(영월댐수물예정지 농촌주택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사업부서인 지역도시과로 분리 편성되어 지역주민에게 혼선 초래 • 동절기 전에 주택완공을 목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야 하였음에도 공기부족, 주택하자 등의 이유로 공사를 지연하여 사업을 이월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사업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할 것임. • 사업별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조기에 착공, 건축물 준공시까지 지도·감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음. 	지역도시과 (건축계)
16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추경에 예산확보 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안전사고요인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당해연도 예산을 이월시킴 • 인명구조도구, 입간판 등은 제작 보관한 뒤 다음연도에 사용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 등 2회에 걸친 수해로 인해 사업대상지를 재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4월~5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 14까지 사업대상지 확정 및 발주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건설과 (재난관리팀)